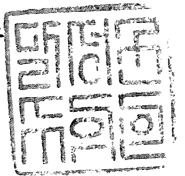
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·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053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일자 : 2021. 12. 1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## 1. 제안 이유

- 달성군 보훈회관 위탁관리·운영 기간 만료가 도래하고, 현 수탁기관인 달성군 보훈회관 입주단체 협의회의 재계약 요청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

## 2. 주요 내용 :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·운영 재계약

- 위 치 : 옥포읍 비슬로458길 12
- 규 모 : 지상 4층, 연면적 1,313.69㎡
- 입주단체 : 10개 단체 10,753명
- 주요시설 : 사무실, 소회의실, 대회의실, 다용도실 등

| 구분 | 용도                    | 연면적(㎡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본동 | PIT층                  | 물탱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89.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지상 1층                 | 사무실(6·25참전유공자회, 광복회, 재향군인회), 소회의실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338.8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지상 2층                 | 사무실(무공수훈자회, 전몰군경미망인회, 전몰군경유족회, 상이군경회), 소회의실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337.6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본동 | 지상 3층                 | 사무실(월남전참전자회, 특수임무유공자회, 고엽제전우회), 호국단체장실, 소회의실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337.6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지상 4층                 | 대회의실, 통신실, 다용도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 |                       | 299.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합 계                   | 1,313.6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 | · 주차대수-16대(장애인 1대 포함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· 정 화 조-오수정화조 100인용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○ 민간위탁 현황

|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| 수탁기관              | 비고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
| 2016. 8. 5.~2018. 12. 31. | 달성군 보훈회관 입주단체 협의회 | 계약  |
| 2019. 1. 1.~2021. 12. 31. | 달성군 보훈회관 입주단체 협의회 | 재계약 |
| 2022. 1. 1.~2024. 12. 31. | 달성군 보훈회관 입주단체 협의회 | 재계약 |

**3. 향후 일정**

○ 2021. 12. 27.: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 · 운영 재계약 체결

붙임 상위 및 관계 법령. 끝.

**□ 「지방자치법」**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**□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**

제6조(관리·운영사무의 위탁)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·운영한다. 다만,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(협회회를 포함한다)에 보훈회관의 관리·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 관리·운영사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제7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같다.

③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, 위탁기간,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, 계약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탁기간 및 재계약) ① 보훈회관 관리·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② 군수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운영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수탁자와 재계약 할 수 있다.

**□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**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

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**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**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수탁대상기관의 인력·기구 및 재정부담능력
2. 수탁대상기관의 시설·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
3.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
4. 지역간 균형분포 등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, 성질,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

**제6조(민간위탁심의위원회)**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를

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“이라 한다)소속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